

2018. 8.29 제정

2019. 4. 15 개정

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19-약관-055 호 (2019. 04.11.)

## 「KEB 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」 특약

### 제 1 조 적용범위

『KEB 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』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『적립식예금 약관』및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을 적용합니다.

### 제 2 조 예금의 종류

이 예금의 종류는 적립식예금으로 합니다.

### 제 3 조 가입대상

(1)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가입시점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, 상근예비역, 의무경찰, 해양의무경찰, 의무소방원, 사회복지무요원에 한합니다.

① 이 예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

②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“「장병내일준비적금」가입자격 확인서” 원본 제출

(2) 이 예금은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없으며, 양도가 불가합니다.

(3) 이 예금은 1인 1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

### 제 4 조 계약기간

(1)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6개월 ~24개월 이내 일단위로 합니다.

(2) 이 예금의 만기일은 고객의 전역(또는 소집해제)예정일로 합니다

(3)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.

### 제 5 조 적립한도

이 예금은 회차별 최소 10원 이상 원단위로, 매월(월 초일부터 말일까지) 20만원 이하 금액을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. 단,「장병내일준비적금」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고객의 최대 저축한도는 월 40만원이며, 동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별 월 20만원까지 저축 가능합니다.

### 제 6 조 이율의 적용

(1) 이 예금의 만기이율은 기본이율과 우대이율을 합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합니다.

(2)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며, 우대이율은 제 7 조

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합니다.

#### 제 7 조 우대이율

은행은 이 예금의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0.5%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합니다.

(1)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(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)보유시 연 0.3%우대

(2)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의 말일까지 본인명의 KEB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3회이상 군급여 입금실적을 보유하거나, 하나카드사의 체크카드(신용카드 포함) 결제 실적이 3회이상 있을경우 연 0.2% 우대

(군급여이체 및 카드결제실적은 월 1회만 인정하며, 군급여이체 실적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이체에 한합니다.)

#### 제 8 조 중도해지이율

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기일 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
#### 제 9 조 만기 후 이율

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 후 금리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
#### 제 10 조 세율의 적용

이 예금은 비과세저축으로만 가능하며,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농어촌특별세법」의 개정에 따라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, 추후 법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(1)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
(2)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
#### 제 11 조 제한사항

(1) 이 예금의 일부해지는 불가하며, 질권설정은 가능합니다.

(2) 이 예금의 신규와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.